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4호 2018. 10. 25.(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0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159호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고사 4
- 하동군 고시 제2018-160호 하천점사용 허가 고시(횡천면장) 12
- 하동군 고시 제2018-16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4
- 하동군 고시 제2018-16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사 16
- 하동군 고시 제2018-16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9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 2018-1011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하동군 공고 제 2018-1017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1
- 하동군 공고 제 2018-1033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7
- 하동군 공고 제 2018-1043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5
- 하동군 공고 제 2018-1046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64
- 하동군 공고 제 2018-105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 입법예고 81
- 하동군 공고 제 2018-1057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997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13
- 하동군 공고 제2018-1026호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고) 115
- 하동군 공고 제2018-1030호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127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의 회 에 서 의 결 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03 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민원
과, 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행
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
호과), 보건소”로,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산림녹지
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산단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체
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관광산업국(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
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관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국관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 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기획행정위원회 : <u>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산업건설위원회 : <u>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산단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소</u> --</p> <p>3. ----- <u>관광산업국(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u> -----</p>

하동군 공고 제2018-159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1. 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합 계	597,580,672,044	603,609,638,514	469,514,815,581	134,094,822,933	
일반회계	553,139,705,274	552,743,693,087	434,913,281,339	117,830,411,748	
특별회계	44,440,966,770	50,865,945,427	34,601,534,242	16,264,411,185	

1-1.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597,580,672,044	605,983,027,485	603,609,638,514	2,373,388,971	101.0	99.6
일반회계	553,139,705,274	555,084,018,138	552,743,693,087	2,340,325,051	99.9	99.6
특별회계	44,440,966,770	50,899,009,347	50,865,945,427	33,063,920	114.5	99.9

1-2.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	비율(%)		
					㉡/㉠	㉢/㉠	㉣/㉠
합 계	597,580,672,044	469,514,815,581	93,983,044,547	34,082,811,916	78.6	15.7	5.7
일반 회계	553,139,705,274	434,913,281,339	89,871,515,337	28,354,908,598	78.6	16.2	5.1
특별 회계	44,440,966,770	34,601,534,242	4,111,529,210	5,727,903,318	77.9	9.3	12.9

1-3.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134,094,822,933	53,783,944,305	38,349,749,322	0	3,823,719,811	38,137,409,495
일반회 계	117,830,411,748	51,526,988,969	36,495,175,448	0	3,007,475,077	26,800,772,254
특별회 계	16,264,411,185	2,256,955,336	1,854,573,874	0	816,244,734	11,336,637,241

2. 일반회계 결산

2-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553,139,705,274	555,084,018,138	552,743,693,087	2,340,325,051	99.9	99.6
지 방 세	24,491,000,000	25,613,202,980	24,398,164,000	1,215,038,980	99.6	95.3
지 방 세	24,491,000,000	25,613,202,980	24,398,164,000	1,215,038,980	99.6	95.3
세 외 수 입	16,051,278,000	18,573,914,520	17,448,628,449	1,125,286,071	108.7	93.9
경상적수입	7,647,711,000	7,594,699,957	7,449,769,317	144,930,640	97.4	98.1
임시적수입	8,403,567,000	10,979,214,563	9,998,859,132	980,355,431	119.0	91.1
지방교부세	196,935,000,000	197,829,751,130	197,829,751,130	0	100.5	100.0
조정교부금 등	31,483,000,000	31,552,423,210	31,552,423,210	0	100.2	100.0
보 조 금	165,412,368,000	162,692,143,040	162,692,143,040	0	98.4	100.0
국고보조금	127,952,440,000	125,650,596,920	125,650,596,920	0	98.2	100.0
도비보조금	37,459,928,000	37,041,546,120	37,041,546,120	0	98.9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8,767,059,274	118,822,583,258	118,822,583,258	0	100.1	100.0

2-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비율(%)		
					㉣/ ㉠	㉣/ ㉡	㉣/ ㉢
합 계	553,139,705,274	434,913,281,339	89,871,515,337	28,354,908,598	78.6	16.2	5.1
일반공공 행정	21,742,983,000	19,863,431,915	319,766,740	1,559,784,345	91.4	1.5	7.2
공공질서및 안전	18,654,818,220	12,969,544,278	5,170,146,050	515,127,892	69.5	27.7	2.8
교 육	4,299,098,000	3,967,533,470	0	331,564,530	92.3	0.0	7.7
문화및 관광	58,054,339,980	40,547,549,518	15,537,122,950	1,969,667,512	69.8	26.8	3.4
환경보호	41,415,962,142	36,066,529,420	3,264,092,376	2,085,340,346	87.1	7.9	5.0
사회복지	89,922,012,000	76,848,948,683	10,708,744,970	2,364,318,347	85.5	11.9	2.6
보 건	9,589,699,000	7,089,546,060	1,665,902,000	834,250,940	73.9	17.4	8.7
농림해양 수산	115,325,685,280	89,541,910,782	17,880,824,440	7,902,950,058	77.6	15.5	6.9
산업·중소 기업	42,988,387,330	37,771,182,431	3,707,276,170	1,509,928,729	87.9	8.6	3.5
수송및 교통	37,341,388,830	23,179,335,700	12,510,774,840	1,651,278,290	62.1	33.5	4.4
국토및지역 개발	56,851,651,492	36,676,734,205	19,106,864,801	1,068,052,486	64.5	33.6	1.9
예 비 비	5,536,865,000	0	0	5,536,865,000	0.0	0.0	100.0
기 타	51,416,815,000	50,391,034,877	0	1,025,780,123	98.0	0.0	2.0

3. 특별회계 결산

3-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비율(%)	
					㉣/㉠	㉣/㉡
합 계	44,440,966,770	50,899,009,347	50,865,945,427	33,063,920	114.5	99.9
상수도사업	10,233,526,260	10,554,109,640	10,521,045,720	33,063,920	102.8	99.7
의료급여기금조성	771,168,000	784,803,240	784,803,240	0	101.8	100.0
저소득주민생활	0	42,504,956	42,504,956	0	-	100.0
주민소득지원자금	768,111,000	756,473,120	756,473,120	0	98.5	100.0
농공지구조성사업	184,391,000	185,156,479	185,156,479	0	100.4	100.0
발전소주변지역	5,633,854,000	7,511,285,741	7,511,285,741	0	133.3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4,376,850,000	8,388,249,774	8,388,249,774	0	191.7	100.0
농업재해복구자금	1,262,092,000	1,280,728,045	1,280,728,045	0	101.5	100.0
수질개선기금사업	16,210,974,510	16,391,999,722	16,391,999,722	0	101.1	100.0
산업단지조성	5,000,000,000	5,003,698,630	5,003,698,630	0	100.1	100.0

3-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비율(%)		
					㉣/ ㉠	㉣/ ㉡	㉣/ ㉢
합 계	44,440,966,770	34,601,534,242	4,111,529,210	5,727,903,318	77.9	9.3	12.9
상수도사업	10,233,526,260	9,029,534,475	205,916,240	998,075,545	88.2	2.0	9.8
의료급여기금조성	771,168,000	716,523,579	0	54,644,421	92.9	0.0	7.1
주민소득지원자금	768,111,000	88,400,400	0	679,710,600	11.5	0.0	88.5
농공지구조성사업	184,391,000	91,946,060	0	92,444,940	49.9	0.0	50.1
발전소주변지역	5,633,854,000	4,210,870,620	0	1,422,983,380	74.7	0.0	25.3
중소기업육성기금	4,376,850,000	4,298,793,908	0	78,056,092	98.2	0.0	1.8
농업재해복구자금	1,262,092,000	0	0	1,262,092,000	0.0	0.0	100.0
수질개선기금사업	16,210,974,510	11,165,465,200	3,905,612,970	1,139,896,340	68.9	24.1	7.0
산업단지조성	5,000,000,000	5,000,000,000	0	0	100.0	0.0	0.0

4.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1,685,154,945	3,023,347,643	5,763,827,085	2,740,479,442	14,708,502,588
재난관리기금	555,398,790	823,363,470	1,338,426,170	515,062,700	1,378,762,260
식품진흥기금	77,341,230	△11,930,810	7,669,190	19,600,000	65,410,420
자활기금	2,719,987,950	60,309,503	80,309,503	20,000,000	2,780,297,453
옥외광고정비기금	4,495,870	44,930	44,930	0	4,540,800
투자유치진흥기금	6,078,503,200	4,118,290,060	4,118,290,060	0	10,196,793,26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249,427,905	△2,138,661,210	17,155,532	2,155,816,742	110,766,695
하동군체육기금	0	171,931,700	201,931,700	30,000,000	171,931,700

5.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합 계	4,159,902,509	614,155,160	800,202,020	3,973,855,649
일반회계	2,310,283,200	0	0	2,310,283,200
특별회계	1,849,619,309	614,155,160	800,202,020	1,663,572,449
저소득주민생활	394,324,592	30,158,610	57,656,080	366,827,122
주민소득지원자금	359,130,670	75,000,000	53,353,340	380,777,330
발전소주변지역	1,096,164,047	508,996,550	689,192,600	915,967,997

6. 채무 결산

6-1. 채무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 정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6-2. 보증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7. 공유재산 결산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40,720	387,014,482,464	115,930	282,007,003,702	251	14,385,329,457	156,399	654,636,156,709
행정 재산	39,689	378,570,777,524	115,866	281,237,835,884	170	12,815,360,004	155,385	646,993,253,404
일반 재산	1,031	8,443,704,940	64	769,167,818	81	1,569,969,453	1,014	7,642,903,305

8. 물품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정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615	572	5,972,890,000	32	475,423,421	16	130,228,920	588	6,318,084,501
업무용	615	572	5,972,890,000	32	475,423,421	16	130,228,920	588	6,318,084,501

9. 재무제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당해연도	1,997,443	93,148	1,904,295	443,878	451,473	7,595
전년도말	1,808,161	11,624	1,796,537	384,655	313,988	△70,667
증감	189,282	81,524	107,758	59,223	137,485	78,262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160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175-3		
성명(법인명)	하동군 황천면장		
범 인 번 호	614-83-00160		
하 천 명 칭	황천강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1186-31(천), 인근: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1141-1(제)		
점 용 면 적	72㎡		
최 초 허 가 일	2018년 9월 27일		
점 용 기 간	2018. 9. 29 ~ 2018. 9. 29.(1일간)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9월 29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16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74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9.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77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74	2018 0928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39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38	2018 0928		2009 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업으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58	2018 0928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44-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3-15	2018 0928		2007 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산75, 828, 82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247-4	2018 0928		2007 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묵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540-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356	2018 0928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261-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새미골길 46	2018 0928		2009 0302	새미골의 골짜기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023-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59-241	2018 0928		2007 0618	안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36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90-38	2018 0928		2007 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00-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25	2018 0928		2007 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47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33	2018 0928		2009 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2-5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90-1	2018 0928		2008 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 2018 - 16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설치)

기준점 번호	토지 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3039	하동읍 읍내리 179-4	35-04-02. 9398	127-44-59. 9647	6.141	중부	274838.81	268409.65	2018.06.12.	맨홀	세계 지역
		35-03-51. 8332	127-44-57. 2543			174530.66	268335.41			
3040	하동읍 읍내리 179-4	35-04-00. 8952	127-45-02. 9041	3.691	중부	274776.36	268484.60	2018.06.12.	맨홀	세계 지역
		35-03-49. 7884	127-45-00. 1939			174468.21	268410.36			
3041	하동읍 읍내리 201	35-03-59. 1093	127-45-04. 6558	3.637	중부	274721.66	268529.40	2018.06.12.	맨홀	세계 지역
		35-03-48. 0022	127-45-01. 9457			174413.50	268455.15			
3042	하동읍 읍내리 199-1	35-03-57. 8063	127-45-02. 2081	3.597	중부	274681.03	268467.68	2018.06.12.	철재	세계 지역
		35-03-46. 6991	127-44-59. 4978			174372.88	268393.44			
3043	하동읍 광평리 5	35-03-55. 8728	127-44-57. 7793	4.752	중부	274620.60	268355.91	2018.06.12.	철재	세계 지역
		35-03-44. 7655	127-44-55. 0686			174312.45	268281.66			

기준점 번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비고
			X	Y			
3044	적량면 우계리 538-2	중부	178474.54	269771.38	2018.07.11.	철재	지역
3045	적량면 우계리 산155-1	중부	178433.92	269846.14	2018.07.11.	철재	지역
3046	적량면 우계리 849-4	중부	178358.29	269828.53	2018.07.11.	철재	지역
3047	적량면 우계리 833-3	중부	178293.29	269829.07	2018.07.11.	철재	지역
3048	적량면 우계리 831-1	중부	178254.66	269840.15	2018.07.11.	철재	지역
3115	악양면 미점리 354-2	중부	181599.75	263253.11	2018.06.14	철재	지역
3116	악양면 미점리 420-1	중부	181389.97	263410.24	2018.06.14.	각인	지역
3117	악양면 미점리 416-9	중부	181282.16	263437.37	2018.06.14.	맨홀	지역
3118	악양면 미점리 산88-1	중부	181504.38	263464.71	2018.06.14	목재	지역
3119	악양면 미점리 565-2	중부	181586.71	263523.87	2018.06.14.	철재	지역
3120	악양면 미점리 산86	중부	181500.58	263554.04	2018.06.14.	각인	지역
3121	악양면 미점리 산86	중부	181509.65	263574.53	2018.06.14.	각인	지역
3122	악양면 미점리 571-3	중부	181502.79	263631.20	2018.06.14	각인	지역
3123	악양면 미점리 571-3	중부	181480.47	263685.11	2018.06.14	각인	지역
3124	악양면 미점리 572-2	중부	181477.74	263724.48	2018.06.14	각인	지역
3125	악양면 미점리 583-2	중부	181420.28	263929.46	2018.06.14	철재	지역
3126	악양면 미점리 704-2	중부	181334.40	264105.32	2018.06.14	철재	지역
3127	악양면 정서리 642-6	중부	185861.75	263121.72	2018.06.26	철재	지역
3128	악양면 정서리 642-8	중부	185899.44	263064.77	2018.06.26	PVC	지역
3129	악양면 정서리 산98-2	중부	186218.18	262864.37	2018.06.26.	각인	지역
3130	악양면 정서리 산98-5	중부	186192.13	262824.90	2018.06.26.	철재	지역

■ 지적도근점(복구)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612	횡천면 학리 1152-62	중부	177620.36	272910.28	2018-06-0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44	횡천면 횡천리 331-6	중부	178782.62	274325.99	2018-06-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94	진교면 양포리 998번기(구)	중부	167390.56	283513.29	2018-07-0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삼각보조점(X, Y 세계좌표 정정)

점명	토지소계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보73	금성면 갈사리 786-3	34-56-56. 6754	127-46-57. 4886	26.231	중부	261725.14	271490.39	2015.08.18.	철재	세계 지역
		34-56-45. 5299	127-46-54. 7888			161417.16	271416.07			
보74	금성면 갈사리 1243	34-56-39. 7171	127-46-51. 9409	3.926	중부	261201.42	271353.70	2015.08.18.	철재	세계 지역
		34-56-28. 5704	127-46-49. 2417			160893.46	271279.40			
보75	금성면 갈사리 142-29	34-56-25. 6025	127-47-08. 1442	3.997	중부	260769.66	271768.29	2015.08.18.	철재	세계 지역
		34-56-14. 4556	127-47-05. 4462			160461.74	271693.98			

하동군 고시 제2018 - 16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76-8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0.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 명주소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311, 3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76-8	2018 101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344-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32-57	2018 1011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60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34-39	2018 1011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33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49-16	2018 1011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39-1, 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77	2018 101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미점리 713-2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개치미동길 129	2018 1011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631-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래실길 188-5	2018 1011		20070618	마을 뒷산이 고래등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89-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늘봉길 166-71	2018 1011		20090302	늘봉산이라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4-2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02-1	2018 1011		20070618	진교의 연원(淵源) 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0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장환길 46-2	2018 1011		20080402	장환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3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40	2018 1011		2008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18-1011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 월 2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2. 제안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건진료 업무에 적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용

-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제25조” 로 변경(안 제1조)
- “의료보험법” 을 “국민건강보험법” 으로 변경(안 제3조 1항, 2항)
- “의료보험 진료치료비” 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으로 변경(안 제3조 1항, 제6조)
- “의료보험” 을 “건강보험” 으로 변경(안 제3조 2항, 제4조)
- “의료보호법” 을 “의료급여법” 로 변경(안 제5조)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삭제>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2항 3호,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증명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 1)
(현행) 1,500원에서 → (개정 안)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변경(안 제 14조 2항 1호)

나.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종류) 및 수수료 개정(안 별표1)

○ 항목 삭제

-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사상 또는 사태증명서, 1통 초과발급

○ 항목 명칭 변경

(현행) (개정 안)

- 근로자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채용신체검사서

○ 수수료 변경

-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현행) 300원 → (개정 안) 500원 변경

다.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항목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 삭제
- 별표 4 “수수료액(제3조 2항 관련)” 삭제

라. 조례 용어 정비

- “보건소의” 를 “보건지소의” 로 변경 (안 제1조)
- “별표” 를 “별표 1” 로 변경(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하동군(보건소, 전화880-6646, FAX 880-6620, naun61@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2018-1011 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로, “보건소” 를 “보건지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험법” 을 “「국민건강보험법」” 으로, “의료보험진료치료비” 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 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의료보험” 을 “건강보험” 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료보호법” 을 “「의료급여법」” 으로 한다.

제6조 중 “의료보험진료치료비” 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를 “별표 1”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법정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건강진단서	1통	500	
2.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3.일반진단서	1통	500	
4.사체검안서	1통	5,000	
5.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6.사망진단서	1통	500	
7.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보건소의 ----- ----- ----- ----- ----- -.
제3조(진료치료비 및 검사 수수료) ① 진료치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치료비 기준액을 적용한다. 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3조(진료치료비 및 검사 수수료) ①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② ----- -----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 . <단서 삭제>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간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약값) ----- ----- 건강보험약 ----- ----- ----- ----- ----- ----- ----- ----- ----- -----.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치료비) 의료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치료비) 「의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치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치료비) 의료보험진료치료비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따라도 가능하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7.7.29., 개정 2013.4.10.>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료급여법」 -----

-----.

제6조(그 밖의 치료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삭 제>

<삭 제>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같다.

③ 삭제

④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7.29., 1999. 8.9.>

제9조(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틀린 글자·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삭 제>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 별표 1-----.

②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조신설 1987.7.29., 개정 2005.3.10.>

-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2. (생 략)
-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물 수질검사

4. (생 략)

제15조(검사시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단위 : 원)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감염병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근로자건강진단서	1통	500	
2.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3.일반진단서	1통	500	
4.특별진단서	1통	2,000	요양신청요양, 병 사용, 상해진단용
5.사체검안서	1통	5,000	
6.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7.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2,900	X-선, 간염검사 포함 간염항체양 성자 1,500원
8.사망진단서	1통	500	
9.출생사산 또는사태증명서	1통	500	
10.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1.1통초과발급	1통	1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건강진단서			(현행과 같음)
2.채용 신체검사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사체검안서			(현행과 같음)
<u><삭 제></u>			
5.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의함
6.사망진단서			(현행과 같음)
<u><삭 제></u>			
7.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현행과 같음)
<u><삭 제></u>			

하동군 공고 제2018-1017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건축조례

2. 제안 이유 :

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 분야 명시(안 제8조)

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기준 신설 (안 제8조의 2)

다.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0조의2)

라. 다세대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안 2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3, FAX 880-2109, e-mail hbbmd@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p> <p>① (생 략)</p> <p><신 설></p> <p>② · ③ (생 략)</p> <p><신 설></p>	<p>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제20조의2 (생략)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신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1033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공제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까지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정비 (안 제8조)

- 재산세: 100분의 100→ 100분의 50

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

-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라.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 삭제(안 제 11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일부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을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로, “100분의 100” 을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 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군)세” 를 “군세”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20 <u>20년 12월 31일</u> ----- ----- ----- <u>2020년</u> <u>12월 31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 2020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0년 12월 31일 -----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100분의 50-----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생 략)

제11조(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중 「지방세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2년간 면제한다.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제2조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감면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세-----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8 - 1043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국(局)설치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 '18.9.4.)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변경(안 제3조제1항)

- 징수관·재무관·총괄채권관리관 : (현행)부군수 → (변경)행정지원국장

- 회계책임관 : (현행)기획예산담당관 → (변경)행정지원국장

나. 관서의 신설·폐지 시 협의 관직 변경(안 제7조)

- 협의자 : (현행)재정관리과장 → (변경)행정지원국장

다. 예산집행품의 국장 전결 금액 마련(안 제21조)

- 국장 :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 매입, 5천만원 이하 제조·용역, 3천만원 이하 기타

라. 본청 재무관 계약업무(입찰) 기준가격 조정(안 제3조제5항)

- 종합공사 : (현행)1억원 초과 → (변경)2억원 초과
 - 전문공사 : (현행)8천만원 초과 → (변경)1억원 초과
 - 기타공사 : (현행)5천만원 초과 → (변경)8천만원 초과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현행)2천만원 초과 → (변경)5천만원 초과
- 마. 세입예산 요구 및 사정 협의자 변경(안 제9조 및 제11조)
- 협의자 : (현행)재정관리과장 → (변경)행정지원국장과 재정관리과장
- 바. 예산집행품의 시 재정사항 협의자 변경(안 제22조)
- 협의자 : (현행)재정관리과장 → (변경)행정지원국장 또는 재정관리과장
- 사.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안 제54조)
-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
 - (기존)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아.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안 제150조)
-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282~5, FAX 880-2279, e-mail cherishyou@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이하"군"이라고 한다)” 을 “하동군”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군” 을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 을 “직원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신설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 을 “별표 2”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1억원” 을 “2억원” 으로, “8천만원” 을 “1억원” 으로, “5천만원” 을 “8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 을 “5천만원” 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재정관리과장” 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정관리과장” 을 “행정지원국장과 재정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재정관리과장” 을 “행정지원국장과 재정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담당관·과장” 을 “국장 및 담당관·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3호(중전의 제2호) 단서 중 “부군수” 를 “국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관리과장” 을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정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 을 “(별표 4)” 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기준” 을 “기준(별표 5)” 으로 한다.

제150조 제목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을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명서류” 를 “증빙서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 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입 관	행정지원국장	-	-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1)일반회계 : 재정관리과장, 각 담당관·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업무담당주사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지원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재정관리과장	-	-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	의회업무담당주사	세입업무담당주사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의회업무담당주사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특 별 회 계 출 납 원	소관 담당관·과의 업무담당주사	-	-
세 입 세 출 납 외 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회 계 책 임 관	-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
분 임 징 수 관	-	-	-	-
재 무 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보건지소장	-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
부 채 관 리 관	-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
통 합 지 출 관	-	-	-	-
지 출 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주사	재무·민원업무담당주사	보건지소 세입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주사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보건지소 경리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하동군(이하"군"이라고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하동군</u> ----- -----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u>군의 본청</u> 을 말한다. 2.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u>자</u> 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조(정의) ① ----- -----. 1. ----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직원</u> <u>은</u> ----- ----- -----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u>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현금 실무담당</u>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u>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현금 실무담당자</u>

당자를 별도로 신설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를 별도로 신설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기획예산담당관

나. 징수관 - 부군수

다. 분임징수관 -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

라. 재무관 - 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1) 일반회계 : 재정관리과장,
각 담당관·과장(일반경비 중
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 담당관·과·사업소
장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사.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
담당관

자.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
담당관

카. 통합지출관 - 재정관리과장

타.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파.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
-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
- 거. 특별회계출납원 - 소관 담당관·과의 업무담당주사
-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군 의회

- 가. 징수관 - 사무과장
- 나. 재무관 - 사무과장
- 다. 분임재무관 - 사무과장
- 라.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 마. 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 바.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주사
- 사. 수입금출납원 - 의회업무담당주사
- 아. 일상경비출납원 - 의회업무담당주사
-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
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
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
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
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
리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읍·
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
해서는 제6호와 제7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
담당주사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
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
무업무담당자

5. 읍·면

- 가. 징수관 - 읍·면장
-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 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다. 채권재무관 - 읍·면장
- 라.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민원업무담당주사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 보건지소

- 가. 분임재무관 - 보건지소장
- 나. 일상경비출납원 - 보건지소 경리업무담당자
- 다. 수입금출납원 - 보건지소 세입업무담당자

7. 보건진료소

- 가. 일상경비출납원 - 보건진료소장
- 나. 수입금출납원 - 보건진료소장

② (생략)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

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관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지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담당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정관리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 별표 2----- .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2. ----- 5천만원

제7조(관서의 신설등) -----
----- 행정지원국장-----

제9조(예산요구서) ① -----

----- 행정지원국장과 재정관리과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과장, 본청 담당관·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정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
지원국장과 재정관리과장-----
-----.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 국장 및
담당관·과장-----
-----.

1. (현행과 같음)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

----- 국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정관리과장,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생략)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지급,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

-----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정관리과장-----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표 3-----

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별표 4)-----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기준
(별표 5)-----.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 증빙서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3조제1항 관련)

관직명	본청	군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행정지원국장	-	-
징수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1)일반회계 : 재정관리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업무담당주사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 관리관	행정지원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 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 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합지출관	재정관리과장	-	-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주사	의사업무 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주사, 세외수입업무 를 주관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	의회업무 담당주사	세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주사	의회업무 담당주사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특별회계 출납원	소관 담당관·과의 업무담당주사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 자	경리업무 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임시 관서	읍·면	읍·면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회계책임관	-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장	-	-
분임징수관	-	-	-	-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보건 지소장	-
총괄채권 관리관	-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장	-	-
총괄부채관리관	-	-	-	-
부채관리관	-	-	-	-
총괄기금관리관	-	-	-	-
통합지출관	-	-	-	-
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주사	재무·민원업무담당주사	보건지소세입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주사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보건지소경리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하동군 공고 제 2018- 1046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3.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제2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1월 08일까지 하동군(수도사업과, 전화880-2606, FAX 880-2599, e-mail: bluekiss8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를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 -----.</p>
<p>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u>군수</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 ----- -----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 -----.</p>
<p>제22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 <u>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을 때는 공동 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삭 제></p>

하동군 공고 제 2018- 1046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 이유

-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하수도요금 및 분뇨수거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분뇨수거 대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알맞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코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하수도 요금 인상(별표 2-1)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별표 5)
-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별표 6)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1월 08일까지 하동군(수도사업과, 전화880-2606, FAX 880-2599, e-mail: bluekiss8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하수도법」”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시행령”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요금표(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하동군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요금표

광역·지방상수도지역						기타지역			
업종별	구 간(m³)	요 금				업종별	연면적(m²)	요금	
		~2018	2019	2020	2021				
가정용	1 ~ 10	140	180	230	300	가정용	100이하	1,300원	
	11 ~ 20	155	200	260	340				
	21 ~ 30	170	220	290	380				
	31 ~ 40	190	250	330	430				
	41 ~ 50	210	270	350	460				
	51이상	230	300	390	510		100이상		1,500원
업무용	1 ~ 20	150	200	260	340	업무용	100이하	2,000원	
	21 ~ 50	170	220	290	380				
	51 ~ 100	200	260	340	440				
	101 ~ 300	230	300	390	510		100이상		3,000원
	301이상	270	350	460	600				
영업용	1 ~ 30	170	220	290	380	영업용	100이하	3,000원	
	31 ~ 50	200	260	340	440				
	51 ~ 100	235	310	400	520				
	101 ~ 500	280	360	470	610		100이상		4,000원
	501이상	330	430	560	730				
욕탕용	1종	1 ~ 500	160	210	270	350	욕탕용	1종	20,000원
		501 ~ 700	185	240	310	400			
		701 ~ 1,000	220	290	380	490			
		1,001이상	260	340	440	570			
	2종	1 ~ 200	190	250	330	430	욕탕용	2종	
		201 ~ 300	225	290	380	490			
		301 ~ 500	270	350	460	600			
		501이상	320	420	550	720			
산업용	1m³	100	130	170	220	산업용	1m³	100원	

-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높은 요금의 업종의 따라 구분함.
- 2. 기타지역이나 하수도검침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광역·지방상수도지역을 적용한다.
- 3. 물가인상률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년 30%)로 인상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m³당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text{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³/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 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 . 운반	처 리	계
10리터	174원	20원	194원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단위 절사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청소	처 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080원	1,500원	18,580원
초과요금 (100리터까지)	1,250원	200원	1,450원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단위 절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의 하수도</u>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u>하수도법</u>」(이하"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하동군</u>----- ----- 「<u>하수도법</u>」----- ----- <u>시행령</u> ----- ----- <u>시행규칙</u> ----- ----- ----- .</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법 제15조</u>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하수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 <u>15조</u>----- ----- .</p>
<p>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군수</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일시사용 신고) ----- ----- ----- ----- <u>하동군수</u> ----- ----- (<u>이하 "군수"라 한다</u>)----- .</p>
<p>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u>규칙 제23조</u>의 규정에 따른 배수 	<p>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p>----- 「<u>하수도법</u>」</p>

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1. 오수 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1]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요금표
(제14조제2항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요금표
(제14조제2항 관련)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하동군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하동군의 상수도 사용업종에 준한다.
 -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요율표

광역·지방상수도지역			기타지역			비고
업종별	구간(m³)	요금	업종별	연면적(m²)	기타지역	
						가정용
11 ~ 20	155					
21 ~ 30	170					
31 ~ 40	190					
41 ~ 50	210					
51 이상	230	100 이상	1,500원			
업무용	1 ~ 20	150	업무용	100 이하	2,000원	
	21 ~ 50	170				
	51 ~ 100	200		100 이상	3,000원	
	101 ~ 500	230				
501 이상	270					
영업용	1 ~ 30	170	영업용	100 이하	3,000원	
	31 ~ 50	200				
	51 ~ 100	235		100 이상	4,000원	
	101 ~ 500	280				
	501 이상	330				
유탕용	1 ~ 500	160	유탕용	1종	20,000원	
	501 ~ 700	185				
	701 ~ 1,000	220	2종	30,000원		
	1,001 이상	260				
	1 ~ 200	190				
	201 ~ 300	225	2종	30,000원		
	301 ~ 500	270				
	501 이상	320				
산업용	1m³	100	산업용	1m³	100원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높은 요율의 업종의 따라 구분함.

2. 기타지역이나 하수도검침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광역·지방상수도지역을 적용한다.

3. <신 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m³당 원인자 부담금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요율표

광역·지방상수도지역					기타지역			
업종별	구간(m³)	요금				업종별	연면적(m²)	요금
		208	209	220	221			
가정용	(현행과 같음)	140	180	230	300	가정용	(현행과 같음)	
		155	200	260	340			
		170	220	290	380			
		190	250	330	430			
		210	270	350	460			
		230	300	390	510			
업무용	(현행과 같음)	150	200	260	340	업무용	(현행과 같음)	
		170	220	290	380			
		200	260	340	440			
		230	300	390	510			
	101 ~ 300	270	350	460	600			
영업용	(현행과 같음)	170	220	290	380	영업용	(현행과 같음)	
		200	260	340	440			
		235	310	400	520			
		280	360	470	610			
		330	430	560	730			
유탕용	(현행과 같음)	160	210	270	350	유탕용	(현행과 같음)	
		185	240	310	400			
		220	290	380	490			
		260	340	440	570			
		190	250	330	430			
		225	290	380	490			
		270	350	460	600			
		320	420	550	720			
산업용	(현행과 같음)	100	130	170	220	산업용	(현행과 같음)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높은 요율의 업종의 따라 구분함.

2. 기타지역이나 하수도검침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광역·지방상수도지역을 적용한다.

3. 물가인상률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년 30%)로 인상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m³당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text{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

○ a = $1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text{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10리터	128원	20원	148원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 단위 절사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청소	처 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210원	1,500원	15,710원
초과요금	1,080원	200원	1,280원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10리터	174원	20원	194원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 단위 절사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청소	처 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080원	1,500원	18,580원
초과요금	1,250원	200원	1,450원

(100리터까지)			
-----------	--	--	--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
단위 절사

(100리터까지)			
-----------	--	--	--

주)수수료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일 경우 원
단위 절사

하동군 공고 제2018-105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가능으로,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읍장 직급 상향 조정
- 읍장(5급) → 읍장(4급 또는 5급)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행정기기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행정복지 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동읍 행정복지 센터	하동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가능으로,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읍장 직급 상향 조정
- 읍장(5급) → 읍장(4급 또는 5급)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행정기기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자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83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52	-						
4급	3	3						
4급~5급	2			1			1	
5급	36	16	2	1	5			12
6급 이하 계	61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									683	-							
정무직 계		1	-									1	-							
군수		1	1									1	1							
일반직 계		652	-									652	-							
4급		3	3									3	3							
4급~5급		1			1							2			1				1	
5급		37	16	2	1	5		1	12			36	16	2	1	5				12
6급 이하 계		611	-									611	-							
별정직 계		3	-									3	-							
5급 상당		1		1								1		1						
6급 상당		2	-									2	-							
연구직 계		2	-									2	-							
연구관		-										-								
연구사		2	-									2	-							
지도직 계		25	-									25	-							
지도관		-										-								
지도사		25	-									25	-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가능으로,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읍장 직급 상향 조정
- 읍장(5급) → 읍장(4급 또는 5급)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행정기기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정무	정무직 계		1	1					
일 반 직	정무직		1	1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4급 소계		3	3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4~5급소계		2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1					1	
	5급 소계		36	16	1	5	2		12
	행정		4	3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5	2			1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6급 소계		159	80	13	12	2	5	47
	행정		10	9	1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1			2
	행정·세무		16	9				1	6
	행정·사회복지		9	6				1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3		6		1	10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8	4					4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3			1			2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반 직	7급 소계	185	89	19	12	4	9	52
	행정	20	14		1	2	1	2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6	4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3				3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4	1				1	2
	행정·세무·시설	4	2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7	4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통신운영	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4	33	5	2	3	40
	행정	14	7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0	6					4
	행정·세무·농업·시설 관리	1	1					
	운전	7	1		1			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11	2		2			7
	행정·해양수산·시설 ·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9	9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4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	3		3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9급 소계	120	74	4	13	1	4	24
	행정	21	14		2	1	2	2
	사회복지	18	7				1	10
	환경	2	2					
	공업	5	5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2						2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7	3				1	3
	행정·농업	9	1		6			2
	행정·시설·방호	19	19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일반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4급 소계	3	3							4급 소계	3	3					
직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직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4~5급소계	2		1			1			4~5급소계	2		1			1	
반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1		1					반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1		1				
	<신 설>									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1					1
직	5급 소계	37	16	1	5	2	1	12	직		5급 소계	36	16	1	5	2	
	행정	4	3			1				행정	4	3			1		
직	의무	1		1					직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반	행정·사회복지	1	1						반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	1	1					
직	행정·농업	2						2	직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반	행정·시설	4	4						반	행정·시설	4	4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직	행정·농업·녹지	2	1					1	직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반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반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5	2			1		2		행정·공업·농업·시설	5	2			1		2
직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직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반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반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직	행정·사회복지	2						1	직	행정·사회복지	1						1

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1057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0 월 19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하동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사용 불가, 환전 불편, 불법 현금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하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하동사랑상품권” 정의는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함(안 제2조)

나. “운영대행사” 정의는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위탁운영 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라. 운영대행사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 판매 분석 등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 철저
- 상품권 운영시스템의 최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위한 확장성 완비토록 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경제전략과, 전화 055-880-2192, FAX 055-880-2199, emperor69@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 임 1.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하동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 2. “판매(충전)대행점” (이하 “대행점” 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무인판매장치 포함) 등을 말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운영대행사” (이하 “대행사” 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

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행점” 을 각각 “대행사 및 대행점”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대행점” 을 “대행사 및 대행점” 으로, “대행점” 을 “대행사 및 대행점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동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이란 하동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p> <p>2. “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p> <p>3. · 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하동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p> <p>2. “판매(충전)대행점” (이하 “대행점” 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무인판매장치 포함) 등을 말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5. “운영대행사” (이하 “대행사” 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은</p>

<신 설>

제14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생략)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생략)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

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사 및 대행점-----

③ -----
----- 대행사 및 대행점-----.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사 및 대행점-----
----- 대행사 및 대행점 등-----

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8 - 997호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8년 6월 1일
- 공 시 대 상 : 하동읍 읍내리 116-97호 외 158호
-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가격(주택과 부속토지의 총액)
- 공 시 방 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 홈페이지 게재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서면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동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사항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7)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 2회)

▶ 8급상당(식품가공전문가)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026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식품가공전문가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년	농산물유통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식품가공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가공 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창업코칭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 시제품 제조 실습 - 가공 자문, 상담, 마케팅, 홍보 지원 - 주요 기자재 관리 및 유지 보수로 시설 운영 정상화 - 식품 원자재, 식품 첨가물 등 주요 자재 관리 ○ 농식품 가공품 개발 : 새로운 제품 연구 및 개발 ○ 제품 허가 및 HACCP 인증 유지

3.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식품가공 전문가	(일반임기제 8급상당)	○ 식품기사 자격증(기술사 포함) 소지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 잔공 및 경력분야: 식품관련 학과 및 경력
- ※ 식품업체 근무 경력, 식품 관련 석사 학위 이상 급 소자자우대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8급	51,705천 원	36,882천 원	8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10. 5	'18. 10. 5 ~ '18. 10. 15	서류전형	-	'18. 10. 16
		면접시험	'18. 10. 17	'18.10. 18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10. 5~ 10. 15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산물유통과(☎ 055-880-6562)

<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동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급상당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하동군 수입증지 7급(7,000원) 8급(5,000원)

※응시번호		응 시 표 (일반임기제채용시험)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급상당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붙임 2 >

이 력 서

가.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8.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 붙임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하동군 시행 2018년도 하동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 2018-1030호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정기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8. 10. 10. ~ 2018. 10. 2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4)

납부자	부과대상 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부과금	우편번호	송달주소	
김*화	경남70누 6920	2018. 9.17	반송합 투합	46,570	53249	거제시	중곡1로2길 21, ***호
서*준	15구 9854	2018. 9.17	주소오 류	6,550	53276	거제시	사등면 상사근길 *
이*랑	96무 7374	2018. 9.13	재개발 지역 반 송	333,150	13833	과천시	별양로 110, 634동 ***호(별 양동, 주공아파트)
이*랑	경남81무 6033	2018. 9.13	재개발 지역 반 송	340,180	13833	과천시	별양로 110, 634동 ***호(별 양동, 주공아파트)
박*태	09무 5415	2018. 9.15	이사	66,640	57714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
이*정	65노 4585	2018. 9.15	반송합 투합	21,680	57803	광양시	폭포사랑길 90, 23동 ***호 (장미아파트)
(주)신한 중공업 지점	86조 8793	2018. 9.17	이사	315,550	57726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
한*호	89러 2268	2018. 9.13	이사	16,230	57627	구례군	간전면 백운천길 **
김*철	97거 1035	2018. 9.13	이사	160,610	57649	구례군	구례읍 봉북길 ***-
대흥건 설(주)	경남8더 3614	2018. 9.13	이사	726,070	529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
김*호	경남81무 3208	2018. 9.17	수취인 불명	517,330	52927	고성면	대가면 유흥갈천길 ***
한*춘	경남81러 2085	2018. 9.13	수취인 불명	202,94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23번길 **
한*춘	경남7도 7203	2018. 9.13	수취인 불명	202,94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23번길 **
이*영	경남2조 1290	2018. 9.13	수취인 불명	126,550	52784	진주시	돛골로 162번길 *-*
김*현	85루 1088	2018. 9.13	수취인 불명	36,080	52743	진주시	향교로109번길 ***-
이*목	97거 4541	2018. 9.13	주소오 류	52,940		진주시	봉곡동 ***-
조*덕	경남80사 7786	2018. 9.17	이사	60,450	52642	진주시	명석면 나불로 ***
김*재	경남7모 4044	2018. 9.17	이사	96,490	52755	진주시	축석로212번길 *-*
푸른영 농조합 법인	97더 3840	2018. 9.17	이사	17,770	52642	진주시	명석면 판문로 ***

푸른영 농조합 법인	경남80무 3271	2018. 9.17	이사	55,730	52642	진주시	명석면 판문로 ***
민*원	경남7누 3755		이사	144,500	52819	진주시	호탄길28번길 ***
이*국	경남81무 4841	2018. 9.17	반송함 투합	32,840	50823	김해시	삼안로 172번길 ***
이*국	경남47가 2457	2018. 9.17	반송함 투합	10,580	50823	김해시	삼안로 173번길 ***
이*국	경남34너 2372	2018. 9.17	반송함 투합	12,660	50823	김해시	삼안로 174번길 ***
배*준	경남70로 3623	2018. 9.17	이사	155,130	50826	김해시	삼안로80번길 *-**
김*문	경남81러 6082	2018. 9.17	주소오 류	340,990	50902	김해시	삼계중앙로 **
권*수	경남81무 4216	2018. 9.13	이사	22,170	57377	담양군	창평면 의병로 *
(주)와이 지개발	82버 6435	2018. 9.12	수취인 불명	30,740	42513	대구시	남구 대덕로40길 **
임*용	경남7모 4790	2018. 9.17	이사	18,020	41734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
오*민	경남81나 4879	2018. 9.17	수취인 불명	624,410	58719	목포시	북항로81번길 *
유*호	39구 3356	2018. 9.14	수취인 불명	35,450	50423	밀양시	내이4길 **
황*순	17나 5130	2018. 9.17	수취인 불명	137,050	46702	부산광 역시	강서구 대저로221번나길 *** (대저1동)
안*남	72노 4248	2018. 9.17	반송함 투합	135,210	48052	부산광 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74번길 31, 6 동 ***호(센텀글로리아)
최*경	97누 8066	2018. 9.17	반송함 투합	25,290	46530	부산광 역시	북구 산상로48번길 *-*
곽*서	64노 1629	2018. 9.17	주소오 류	50,940	47148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7, 503동 ****호
권*성	89오 5135	2018. 9.12	이사	48,690	49058	부산시	영도구 번영길 ***
김*화	97거 2010	2018. 9.13	반송함 투합	32,760	46644	부산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
(주)오션 로직스	경남81사 7815	2018. 9.13	이사	96,38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주)오션 로직스	경남99사 1535	2018. 9.13	이사	90,22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주)오션 로직스	경남99바 9173	2018. 9.13	이사	94,35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주)오션 로직스	경남99바 9176	2018. 9.13	이사	89,57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주)오션	경남99바	2018.	이사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로직스	7653	9.13		283,920			
(주)오션 로직스	경남80아 1540	2018. 9.13	이사	91,10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주)오션 로직스	경남99바 9175	2018. 9.13	이사	49,640	48755	부산시	동구 범일로 *
이*철	93주 9865	2018. 9.13	이사	51,310	52500	사천시	곤명면 오랑길 **~**
이*철	84가 6419	2018. 9.13	이사	143,430	52500	사천시	곤명면 오랑길 **~**
이*철	65가 3213	2018. 9.13	이사	4,990	52500	사천시	곤명면 오랑길 **~**
(주)삼화 토건	97소 4941	2018. 9.13	이사	11,070	52500	사천시	곤명면 곤명1로 ***
손*숙	27더 7096	2018. 9.13	주소오 류	114,230	52520	사천시	사천읍 사주길 **~*
권*순	68로 5050	2018. 9.13	수취인 불명	24,130	52551	사천시	강척길 20 3동 ***호
(주)강남 투어여 행사	경남72바 9740	2018. 9.13	주소오 류	849,630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
(주)강남 투어여 행사	경남72바 9734	2018. 9.13	주소오 류	859,080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
(주)강남 투어여 행사	경남72바 9739	2018. 9.13	주소오 류	83,790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
서*주	경남81다 7216	2018. 9.17	이사	52,380	52550	사천시	주공로 **
박*희	경남81머 1297	2018. 9.13	이사	224,780	52234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
최*대	경남37가 4662	2018. 9.13	이사	146,810	52251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101번길 **
김*선	95머 5145	2018. 9.15	이사	167,890	59730	여수시	진남로 ***~*
신*필	경남71라 2315	2018. 9.15	주소오 류	53,580	59602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
박*목	95보 4034	2018. 9.17	이사	219,550	55923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 ***~**
박*목	94구 3337	2018. 9.17	이사	40,090	55923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 ***~**
최*호	93거 2823	2018. 9.17	수취인 불명	50,970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
김*곤	경남34거 6616	2018. 9.15	이사	143,720	63001	제주특 별자치 시	추자면 예초1길 **
오*길	96수	2018.	이사	39,880	53084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2521	9.17					
최*영	경남7도 2501	2018. 9.13	이사	248,380	50215	합천군	용주면 우곡계성길 ***-**
강*모	94서 5122	2018. 9.13	이사	15,750	52340	고전면	월진길 **-*
강*모	95도 3827	2018. 9.13	이사	5,950	52340	고전면	월진길 **-*
강*모	84가 7597	2018. 9.13	이사	123,140	52340	고전면	월진길 **-*
이*주	부산8라 9870	2018. 9.13	이사	148,030	52340	고전면	궁단로 **-*
이*주	83저 5424	2018. 9.13	이사	249,530	52340	고전면	궁단로 **-*
김*식	경남80두 4418	2018. 9.13	수취인 부재	319,350	52340	고전면	하동읍성로 ***
김*식	경남82나 1912	2018. 9.13	수취인 부재	198,710	52340	고전면	하동읍성로 ***
이*도	84나 4014	2018. 9.13	이사	163,150	52340	고전면	늘봉길 ***
남성건 설(주)	경남80루 8839	2018. 9.13	이사	200,270	52340	고전면	재첩길 **
이*철	84가 6419	2018. 9.13	이사		52340	고전면	재첩길 **
김*정	96루 5093	2018. 9.13	이사	39,720	52339	고전면	신월길 *
강*우	81저 9257	2018. 9.13	수취인 부재	51,090	52340	고전면	조간너리길 **
신*우	경남80두 3126	2018. 9.13	수취인 부재	51,090	52340	고전면	조간너리길 **
조*홍	경남81무 2588	2018. 9.13	이사	812,900	52340	고전면	잔너리길 ***-*
조*홍	경남8즈 1612	2018. 9.13	이사	643,330	52340	고전면	잔너리길 ***-*
박*희	경남47가 3950	2018. 9.13	이사	469,230	52340	고전면	백석길 **
농업회 사법인 (주)더좋은농부	47저 6874	2018. 9.13	수취인 불명	117,250	52338	고전면	지소1길 **
(주)신라 건설	97나 3192	2018. 9.13	이사	14,420	52339	고전면	냉정길 *
박*선	65나 2401	2018. 9.13	이사	47,150	52339	고전면	시목길 **
전*도	26다 4033	2018. 9.13	이사	12,280	52340	고전면	하동읍성로 ***
한*규	05고	2018.	이사		52340	고전면	조간너리길 **

	7716	9.13		124,270			
김*기	86로 7602	2018. 9.13	이사	58,000	52340	고전면	선소길 ***
김*기	97도 6358	2018. 9.13	이사	26,360	52340	고전면	선소길 ***
(유)하 성건설	경남81무 6471	2018. 9.17	이사	166,480	52339	고전면	신월길 **
(유)하 성건설	경남81무 6465	2018. 9.17	이사	33,020	52339	고전면	신월길 **
(유한) 목민건 설	경남34거 7351	2018. 9.17	이사	36,340	52339	고전면	신월길 **
(유한) 목민건 설	경남47나 1461	2018. 9.17	이사	18,270	52339	고전면	신월길 **
에코탑 성(주)	95머 5622	2018. 9.13	수취인 불명	38,340		금남면	섬진강대로 917 ***호
에코탑 성(주)	90더 1796	2018. 9.13	수취인 불명	36,470		금남면	섬진강대로 917 ***호
유*희	84다 7709	2018. 9.13	이사	289,470	52350	금남면	사궁길 **
하남토 건(주)	경남80루 5951	2018. 9.13	이사	835,750	52352	금남면	경충로 ****
이*영	97서 1400	2018. 9.13	이사	225,950	52351	금남면	동산길 **
이*영	59두 6450	2018. 9.13	이사	48,500	52351	금남면	동산길 **
황*이	경남70나 1345	2018. 9.13	수취인 불명	762,860	52351	금남면	한재길 ***
유*숙	경남70가 1518	2018. 9.12	이사	365,560	52350	금남면	사궁길 *
유*숙	경남82가 3646	2018. 9.12	이사	494,440	52350	금남면	사궁길 *
정*훈	96저 4386	2018. 9.13	이사	17,080	52351	금남면	중평해안길 ***
정*범	82오 3591	2018. 9.13	수취인 불명	17,680	52351	금남면	한재길 ***
이*경	57서 5238	2018. 9.13	수취인 불명	12,490	52352	금남면	쇠끝길 **
이*륜	97마 1545	2018. 9.13	주소오 류	72,170	52351	금남면	동산길 ***
이*륜	96무 8769	2018. 9.13	주소오 류	16,250	52351	금남면	동산길 ***
이*숙	96무 7231	2018. 9.12	수취인 불명	23,400	52352	금남면	대도길 ***
정*호	96우	2018.	수취인		52352	금남면	대도길 ***

	6041	9.13	불명	109,300			
(주)석진 산업	경남34너 2842	2018. 9.13	이사	399,070	52350	금남면	섬진강대로 ***
황*이	경남70나 1345	2018. 9.17	수취인 불명	762,860	52351	금남면	한재길 **-*
김*권	경남8으 2366	2018. 9.17	이사	1,278,8 70		금남면	송문리 760-2 노량빌라 ***호
하*용	18마 5860	2018. 9.14	이사	155,860	52350	금남면	작은삼내길 ***
하*용	82저 7224	2018. 9.14	이사	119,850	52350	금남면	작은삼내길 ***
하*용	경남80루 5225	2018. 9.14	이사	219,500	52350	금남면	작은삼내길 ***
하*용	경남81라 6135	2018. 9.14	이사	266,220	52350	금남면	작은삼내길 ***
유*숙	0002000 1(대성숲 불갈비)	2018. 9.14	이사	30,130	52350	금남면	사궁길 *
전*지	0058000 1(전도당 구장)	2018. 9.14	수취인 불명	75,850	52350	금남면	섬진강대로 *** */*
최*익	경남82거 1674	2018. 9.13	이사	150,200	52353	금성면	황도길 **-*
(주)한아 름	96부 1091	2018. 9.13	이사	312,490	52353	금성면	금성중앙길 ***
(주)한아 름	경남8스 8045	2018. 9.13	이사	807,920	52353	금성면	금성중앙길 ***
강*일	96무 7566	2018. 9.13	이사	180,620	52353	금성면	금성중앙길 ***
(주)석양	경남99사 1506	2018. 9.13	이사	94,350		금성면	가덕리 산****-*
남*동	97거 2531	2018. 9.13	이사	79,360	52353	금성면	명덕윗담길 **
케이시 에이산 업개발 (주)	47도 6737	2018. 9.13	이사	27,020	52353	금성면	명덕길 *
김*환	72도 3876	2018. 9.13	이사	11,870	52355	금성면	연막윗길 **-*
최*철	37주 7874	2018. 9.13	이사	56,760	52355	금성면	명선길 **-*
최*암	94리 6858	2018. 9.13	이사	212,020	52353	금성면	신도길 ***
최*암	95서 7621	2018. 9.13	이사	65,130	52353	금성면	신도길 ***

정*수	84서 9276	2018. 9.13	이사	113,200	52355	금성면	연막중앙길 ***
정*수	83두 1771	2018. 9.13	이사	24,240	52355	금성면	연막중앙길 ***
(유)해 동기업	경남71라 1576	2018. 9.13	이사	33,020		금성면	갈사리 ***
김*봉	경남81무 4489	2018. 9.13	이사	670,670		금성면	갈사리 ***
한*흥	87루 3014	2018. 9.13	이사	200,660	52355	금성면	서근속등길 ***
김*규	전남89다 1845	2018. 9.13	이사	99,510	52355	금성면	내도청도길 ***
공*영	경남34너 8645	2018. 9.13	이사	59,330	52353	금성면	고포마을길 ***
이*수	94마 7735	2018. 9.13	이사	74,530	52353	금성면	금성로 ***
이*수	경기55라 4638	2018. 9.13	이사	23,740	52353	금성면	금성로 ***
황*필	17무 9052	2018. 9.13		56,760	52355	금성면	산업로 485, 105동 ***호
박*근	경남71가 6763	2018. 9.13	반송합 투합	102,760	52355	금성면	산업로 485, 104동 ***호
박*근	51부 2961	2018. 9.13	반송합 투합	59,660	52355	금성면	산업로 485, 104동 ***호
백*성	97너 4535	2018. 9.13	이사	58,410	52355	금성면	나팔중앙길 ***
백*성	경남80나 8989	2018. 9.13	이사	10,390	52355	금성면	나팔중앙길 ***
박*심, 천*호	54구 5147	2018. 9.17	이사	448,940	52355	금성면	금성로 ***
박*심, 천*호	41너 1174	2018. 9.17	이사	134,910	52355	금성면	금성로 ***
문*길	97가 5003	2018. 9.17	이사	33,800	52353	금성면	신도길 ***
문*길	40서 6573	2018. 9.17	이사	5,570	52353	금성면	신도길 ***
김*중	16가 9629	2018. 9.13	이사	18,860	52315	북천면	옥단로 ***
박*갑	73조 8575	2018. 9.13	이사	157,230	52315	북천면	옥단로 ***
임*택	95머 1479	2018. 9.12	이사	24,770	52305	악양면	덕기길 *-**
여*모	85루 5113	2018. 9.12	이사	12,94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강*순	경남80두 6462	2018. 9.12	이사	49,540	52305	악양면	회남재로 **

청학동 버섯영 농조합 법인	경남81무 3709	2018. 9.13	주소오 류	33,800		악양면	매계리 ***
청학동 버섯영 농조합 법인	경남81무 2857	2018. 9.13	주소오 류	654,880		악양면	매계리 ***
김*하	경남6으 1343	2018. 9.13	이사	539,60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김*하	경남8오 1236	2018. 9.13	이사	234,98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김*하	경남80두 2048	2018. 9.13	이사	64,11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김*하	64소 3088	2018. 9.13	이사	135,04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김*화	경남8즈 1554	2018. 9.12	이사	835,170	52305	악양면	악양서로 ***
강*조	88라 5957	2018. 9.13	수취인 불명	209,040	52307	악양면	입석길 ***
박*호	90누 1442	2018. 9.17	수취인 불명	65,680	52306	악양면	신흥길 ****
김*하	0081000 1(산시)	2018. 9.14	이사	215,500	52305	악양면	중기길 **
김*태	96주 3242	2018. 9.13	이사	9,420	52335	양보면	원양샘골길 ***
최*주	경남82나 2480	2018. 9.13	이사	40,470	52336	양보면	서제길 ***
최*현	57우 2717	2018. 9.13	이사	231,550	52336	양보면	서제길 ***
최*현	66서 9034	2018. 9.13	이사	12,590	52336	양보면	서제길 ***
최*현	95고 2412	2018. 9.13	이사	41,690	52336	양보면	서제길 ***
최*현	66무 7938	2018. 9.13	이사	45,060	52336	양보면	서제길 ***
김*준	경남80구 2743	2018. 9.13	이사	276,440	52336	양보면	수책길 **
문*기	경남8므 1992	2018. 9.17	이사	601,590	52336	양보면	진양로 *****
문*기	62누 4842	2018. 9.17	이사	32,810	52336	양보면	진양로 *****
이*주	96루 1179	2018. 9.17	이사	185,190	52337	양보면	구무고개길 ***
이*주	10거 7266	2018. 9.17	이사	122,730	52337	양보면	구무고개길 ***

이*주	경남81거 6914	2018. 9.17	이사	83,370	52337	양보면	구무고개길 ***-**
장*옥	84더 8889	2018. 9.12	이사	19,250	52312	옥종면	오을길 **
(주)동명 산업	경남8코 2847	2018. 9.13	이사	23,580	52313	옥종면	미산길 *
이*우	경남7모 3106	2018. 9.13	수취인 불명	434,200		옥종면	청룡리 ***-*
최*운	경남81무 5853	2018. 9.13	이사	31,810	52312	옥종면	공항길 ***-**
김*상	47거 8183	2018. 9.13	이사	66,040	52312	옥종면	내촌길 **
이*수	97라 5116	2018. 9.13	이사	22,050	52312	옥종면	공항길 ***-**
한*구	93나 2074	2018. 9.13	이사	49,540	52313	옥종면	옥종중앙길 ***-*
정*덕	68루 2050	2018. 9.12	수취인 불명	9,220	52313	옥종면	옥종중앙길 **
동남연 와산업 (주)	경남7도 4412	2018. 9.13	이사	2,414,2 60	52313	옥종면	옥단로 ***
정*식	경남80무 1750	2018. 9.17	수취인 불명	381,060	52314	옥종면	북방우회길 ***-**
(주)풍성 산어	경남71라 2594	2018. 9.17	이사	485,600	52313	옥종면	옥단로 ***-*
권*현	65두 2426	2018. 9.17	이사	337,860	52314	옥종면	덕천로 ***
김*경	39조 9119	2018. 9.12	이사	35,540	52320	적량면	중서길 ***-*
곽*도	63노 9195	2018. 9.12	수취인 불명	13,830	52320	적량면	서촌길 ***-*
박*기	87두 4921	2018. 9.12	수취인 불명	48,890	52321	적량면	상동산길 *
김*석	09너 6463	2018. 9.12	이사	33,020	52321	적량면	경서대로 ***
이*호	81가 7438	2018. 9.13	이사	108,140	52321	적량면	황금길 **
이*호	75나 3785	2018. 9.13	이사	126,730	52321	적량면	황금길 **
이씨엠 (주)하동 지점	96무 7089	2018. 9.13	수취인 불명	819,980	52321	적량면	한옥정길 ***-**
엄*실	26서 0896	2018. 9.13	이사	76,040	52334	적량면	고석길 ***-*
농업회 사법인	97머 7013	2018. 9.13	이사	5,800	52334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

행복찬 주식회 사							
오*영	97나 1722	2018. 9.17	이사	125,260	52334	적량면	안성길 **
오*영	경남7러 1452	2018. 9.17	이사	107,580	52334	적량면	안성길 **
김*수	19더 4517	2018. 9.17	이사	129,170	52333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
김*철	84머 9034	2018. 9.17	이사	115,580	52321	적량면	한옥정길 ***-***
박*삼	경남70러 6220	2018. 9.13	주소오 류	378,180	52345	진교면	민다리길 **
(주)두룡 종합건 설	경남81너 9925	2018. 9.12	수취인 불명	32,600		진교면	미진스위트빌 상가동 ***
문*임	96가 2052	2018. 9.13	이사	24,990	52345	진교면	민다리길 ***-
김*남	97거 2653	2018. 9.13	이사	15,310	52349	진교면	금오산길 ***-***
김*복	70너 2145	2018. 9.13	이사	33,020	52349	진교면	소전방길 **
강*훈	경남71라 2403	2018. 9.12	이사	526,960	52345	진교면	진양로 **
강*훈	경남81도 3176	2018. 9.12	이사	155,980	52345	진교면	진양로 **
고*란	82버 9332	2018. 9.13	이사	20,730	52345	진교면	상평1길 13, ***호
김*태	경남47나 1373	2018. 9.13	이사	505,230	52344	진교면	선창길 **
김*오	경남34거 5039	2018. 9.13	수취인 불명	7,670	52346	진교면	진양로 ***-*
김*오	17나 7180	2018. 9.13	수취인 불명	126,850	52346	진교면	진양로 ***-*
김*오	96루 3426	2018. 9.13	수취인 불명	34,720	52346	진교면	진양로 ***-*
서*상	경남81다 7407	2018. 9.13	이사	201,240	52344	진교면	민다리길 ***
(주)하동 고속관 광	79버 7806	2018. 9.13	이사	94,350		진교면	관곡리 ***-*
문*열	97나 1581	2018. 9.13	이사	85,490	52344	진교면	민다리길 **
문*열	경남7느 5235	2018. 9.13	이사	10,000	52344	진교면	민다리길 **
박*화	07가	2018.	이사	17,680	52349	진교면	대전방길 **

	3114	9.13					
박*화	54소 9614	2018. 9.13	이사	4,300	52349	진교면	대전방길 **
합자회 사진교 기업농 업회사	경남81무 1675	2018. 9.13	이사	733,950		진교면	송원리 **~****
최*진	경남34거 5344	2018. 9.12	이사	14,620	52349	진교면	들포길 38, 104동 ****호
이*실	94우 7592	2018. 9.13	수취인 불명	45,430	52346	진교면	신안길 **~*
이*한	89소 8488	2018. 9.13	이사	49,680	52345	진교면	민다리길 117-6 다동 *호
용선지 조경주 식회사	88더 3362	2018. 9.13	이사	19,870	52344	진교면	경충로 ****
남*우	39도 5586	2018. 9.17	이사	212,530	52344	진교면	민다리길 ***
(주)오리 엔탈중 공업	96우 7995	2018. 9.17	이사	188,380	52346	진교면	신안길 **~*
(주)오리 엔탈중 공업	96우 7832	2018. 9.17	이사	28,920	52346	진교면	신안길 **~*
(주)오리 엔탈중 공업	97러 6126	2018. 9.17	이사	26,930	52346	진교면	신안길 **~*
(주)오리 엔탈중 공업	경남70고 2822	2018. 9.17	이사	45,440	52346	진교면	신안길 **~*
김*순	84더 5993	2018. 9.17	수취인 불명	56,530	52346	진교면	구고속도로 ****~**
김*순	17마 5746	2018. 9.17	수취인 불명	77,350	52346	진교면	구고속도로 ****~**
강*주	경남81도 3176	2018. 9.17	이사	256,980	52345	진교면	진양로 **
천왕영 농조합 법인	05고 2771	2018. 9.17	수취인 불명	22,850	52346	진교면	구고속도로 ***
천왕영 농조합 법인	97더 6576	2018. 9.17	수취인 불명	368,470	52346	진교면	구고속도로 ***
(주)우진 산업	21나 8766	2018. 9.17	이사	87,560	52346	진교면	진양로 ****~**
정*우	04누	2018.	수취인	120,410	52345	진교면	진양로 **~*

	8448	9.17	불명				
조*식	96무 8792	2018. 9.17	이사	7,200	52348	진교면	민다리길 **
조*식	51라 8022	2018. 9.17	이사	45,730	52348	진교면	민다리길 **
청학동 삼선당 (주)	96무 7674	2018. 9.12	수취인 불명	70,960	52310	청암면	고래실길 ***-**
한*우	10가 5940	2018. 9.12	이사	96,080	52310	청암면	청학로 ***
(주)농협 샘물	경남71라 1642	2018. 9.12	이사	673,470	52309	청암면	청학로 ****-**
김*완	91더 4259	2018. 9.12	이사	133,460	52309	청암면	청학로 ****
박*원	91머 3620	2018. 9.12	이사	66,030	52309	청암면	청학로 ****-*
조*래	64머 9866	2018. 9.12	이사	121,110	52309	청암면	청학로 ****-**
조*래	96우 8247	2018. 9.12	이사	169,570	52309	청암면	청학로 ****-**
강*주	95주 9343	2018. 9.13	수취인 불명	119,120	52310	청암면	하촌길 **-**
강*주	82루 6808	2018. 9.13	수취인 불명	59,400	52310	청암면	하촌길 **-**
강*주	49부 5233	2018. 9.13	수취인 불명	35,950	52310	청암면	하촌길 **-**
하*선	경남47나 2326	2018. 9.13	수취인 불명	136,070	52309	청암면	삼신봉로 **-**
하*선	경남7느 2867	2018. 9.13	수취인 불명	326,730	52309	청암면	삼신봉로 **-**
하*선	96무 5127	2018. 9.13	수취인 불명	224,780	52309	청암면	삼신봉로 **-**
김*록	경남80무 2284	2018. 9.17	수취인 불명	232,520		청암면	상이리 ***번지 */*
노*현	84서 6898	2018. 9.17	수취인 불명	163,100	52310	청암면	청학로 ***-*
노*현	72나 3514	2018. 9.17	수취인 불명	317,930	52310	청암면	청학로 ***-*
노*현	86나 7800	2018. 9.17	수취인 불명	31,860	52310	청암면	청학로 ***-*
우주통 상(주)	99부 7404	2018. 9.12	수취인 불명	78,750		하동읍	비파리 ***-*
강*은	66가 9778	2018. 9.12	수취인 불명	132,680	52333	하동읍	군청로 ***-**
김*곤	65너 1146	2018. 9.12	수취인 불명	57,750	52326	하동읍	서동길 *

김*석	경북81노 4793	2018. 9.12	이사	137,460	52331	하동읍	동교2길 *
이*영	86거 7849	2018. 9.12	이사	45,960	52325	하동읍	하마길 **
이*영	경남80무 6972	2018. 9.12	이사	24,430	52325	하동읍	하마길 **
서*명	경남80무 1324	2018. 9.12	수취인 불명	114,490	52324	하동읍	소재1길 *-*
서*명	경남5가 8354	2018. 9.12	수취인 불명	418,480	52324	하동읍	소재1길 *-*
이*구	71부 5070	2018. 9.12	수취인 불명	64,760	52323	하동읍	경서대로 ***-***
우량종 합건설 (주)	85가 9484	2018. 9.12	이사	169,820	52324	하동읍	연화길 *-***
이*철	61러 6164	2018. 9.12	주소오 류	73,600	52325	하동읍	하마길 ***-***
황*욱	01조 0414	2018. 9.12	수취인 불명	50,000	52325	하동읍	수박등길 *
권*자	96루 6451	2018. 9.12	이사	605,500	52322	하동읍	화시밀 ***-*
이*규	83무 7489	2018. 9.12	이사	48,630	52322	하동읍	화심길 ***
이*규	97오 8244	2018. 9.12	이사	82,450	52322	하동읍	화심길 ***
이*규	97가 3283	2018. 9.12	이사	95,880	52322	하동읍	화심길 ***
이*규	경남80무 1352	2018. 9.12	이사	91,780	52322	하동읍	화심길 ***
김*환	경남70고 1869	2018. 9.12	이사	291,380	52322	하동읍	섬진강대로 *****
김*환	29더 8754	2018. 9.12	이사	28,430	52322	하동읍	섬진강대로 *****
농업회 사법인 하동항 철(주)	97나 1821	2018. 9.12	이사	49,960	52327	하동읍	중앙로 ***
변*길	97거 2969	2018. 9.12	수취인 불명	72,190	52328	하동읍	오룡정길 **
김*철	31나 6021	2018. 9.12	이사	236,970	52326	하동읍	중서1길 *
전*미	05노 4490	2018. 9.12	이사	47,150	52327	하동읍	중앙로 **
최*환	79버 7007	2018. 9.12	이사	576,460	52322	하동읍	섬진강대로 *****
김*희	경남70도	2018.	수취인		52326	하동읍	중앙로 **

	1260	9.13	불명	351,770			
장*상	79노 1008	2018. 9.13	이사	8,330	52329	하동읍	중앙1길 *-*
(주)서경 렌트카	73허 4701	2018. 9.13	이사	42,900	52328	하동읍	나루터길 *
이*칠	97나 2550	2018. 9.13	이사	146,680	52328	하동읍	나루터길 **~**
하동건 설(주)	경남81무 5155	2018. 9.13	수취인 불명	319,450		하동읍	비파리 *-*
권*현	66수 8961	2018. 9.13	수취인 불명	283,280	52332	하동읍	송림2길 *
강*영	경남81무 1655	2018. 9.13	이사	232,010	52328	하동읍	나루터길 **
강*영	83오 9920	2018. 9.13	이사	34,460	52328	하동읍	나루터길 **
배*성	84더 8462	2018. 9.13	수취인 불명	37,670		하동읍	화심리 옐로우캡 택배
이*열	97더 3943	2018. 9.13	수취인 불명	113,520	52329	하동읍	산복1길 **~**
(주)가람 조경	경남47가 4466	2018. 9.13	이사	255,550	52329	하동읍	중앙1길 **
(주)가람 조경	경남81무 2813	2018. 9.13	이사	357,850	52329	하동읍	중앙1길 **
이*아	경남81무 1760	2018. 9.13	수취인 불명	667,870	52324	하동읍	경서대로 ***~**
정*식	경남5나 6988	2018. 9.13	이사	823,550	52324	하동읍	경서대로 ***~*
대한개 발주식 회사	경남81무 2997	2018. 9.13	이사	1,031,500	52324	하동읍	경서대로 ***
변*옥	경남7모 1672	2018. 9.13	이사	344,360	52328	하동읍	섬진강대로 ****
(주)평화 토건	경남47가 6249	2018. 9.13	수취인 불명	231,800		하동읍	읍내리 ***~**
박*숙	42더 1473	2018. 9.13	이사	33,020	52329	하동읍	시장1길 **~*
안*종	99부 7323	2018. 9.13	이사	23,570	52328	하동읍	나루터길 *-*
김*섭	50고 8130	2018. 9.13	이사	7,970	52330	하동읍	시장2길 **~*
하*준	84루 8372	2018. 9.13	이사	46,300	52329	하동읍	중앙4길 *-*
조*정	97나 4573	2018. 9.13	이사	24,700	52328	하동읍	향교2길 **~**
송*수	경남7느 5057	2018. 9.13	수취인 불명	13,070	52322	하동읍	예인촌길 **

김*배	경남81무 3910	2018. 9.12	이사	249,880	52322	하동읍	섬진강대로 *****
김*배	07어 3511	2018. 9.12	이사	328,970	52322	하동읍	섬진강대로 *****
변*숙	84너 3340	2018. 9.13	이사	33,020	52328	하동읍	섬진강대로 ****
양*백	97거 2019	2018. 9.13	수취인 불명	108,330		하동읍	대경송림타운 102동 ***호
탁*성	0084000 1(삼성의 료)	2018. 9.14	이사	18,780	52330	하동읍	중앙로 **
탁*성	0084000 1(삼성의 료)	2018. 9.14	이사	105,650	52330	하동읍	중앙로 **
임*심	0051000 1(골든 벨)	2018. 9.17	수취인 불명	102,530	52329	하동읍	중앙1길 *-*
김*형	0241000 1(제우스 당구클 럽)	2018. 9.14	이사	60,490	52330	하동읍	시장1길 **
다사돌 지킴이 환경운 동본부	0246000 1(다사돌 지킴이)	2018. 9.14	수취인 불명	39,000		하동읍	비파리 ****-
김*채	97소 7899	2018. 9.12	수취인 불명	9,890	52322	하동읍	경서대로 ***
차*균	경남81무 2708	2018. 9.12	수취인 불명	24,060	52333	하동읍	목도1길 ****-
안*용	경남47나 2650	2018. 9.12	수취인 불명	23,580	52333	하동읍	부두길 **
강*호	95고 2827	2018. 9.12	수취인 불명	23,580	52333	하동읍	신기공항길 ****-
백산전 력주식 회사	41두 5713	2018. 9.12	이사	18,850	52333	하동읍	군청로 ****-
김*훈	18루 1609	2018. 9.12	이사	3,220	52333	하동읍	구통길 *-*
최*환	경남81무 6391	2018. 9.12	이사	12,490	52322	하동읍	범바위길 **-
박*하	35소 4717	2018. 9.12	이사	18,860	52324	하동읍	소재2길 **-
건설노 조하동 지회	72루 3965	2018. 9.12	수취인 불명	18,970	52324	하동읍	연화길 *-*

(신원 호)							
이*기	31도 7533	2018. 9.12	이사	6,370	52326	하동읍	청년회관길 **
정*수	97누 9640	2018. 9.12	수취인 불명	24,760	52322	하동읍	고서길 ***-
변*식	07무 6640	2018. 9.12	이사	13,540	52328	하동읍	섬진강대로 ****
정*섭	49부 8455	2018. 9.12	이사	7,530	52327	하동읍	중앙로 **
대웅건 설(주)	경남81무 2185	2018. 9.12	이사	35,210	52327	하동읍	중앙로 ***
안*용	32다 9390	2018. 9.12	수취인 불명	26,870		하동읍	신기리 ****-
김*자	96무 7187	2018. 9.12	수취인 불명	195,150	52333	하동읍	부두길 **
박*홍	65노 3166	2018. 9.13	이사	74,150		화개면	탐리 ****-
신*성	경남7노 7227	2018. 9.13	이사	74,620	52303	화개면	화개로 *
김*철	울산80러 7875	2018. 9.13	이사	112,240		화개면	차시배지길 **
명*동	경남80루 3031	2018. 9.13	이사	24,770	52304	화개면	부춘길 ***
엄*열	23라 2226	2018. 9.13	이사	15,470	52303	화개면	원탑1길 **
강*태	97러 8372	2018. 9.13	이사	24,240	52303	화개면	쌍계로 ***
강*태	19주 4692	2018. 9.13	이사	18,860	52303	화개면	쌍계로 ***
김*민	10도 8648	2018. 9.13	이사	115,48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박*주	33머 9376	2018. 9.13	이사	18,860	52304	화개면	부춘길 ***
박*주	33나 8878	2018. 9.13	이사	23,580	52304	화개면	부춘길 ***
박*주	23수 7252	2018. 9.13	이사	23,580	52304	화개면	부춘길 ***
김*기	97소 3422	2018. 9.15	수취인 불명	31,560	52301	화개면	판교길 *
서*생	87고 8428	2018. 9.17	이사	33,31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94우 7597	2018. 9.17	이사	44,46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95고 1007	2018. 9.17	이사	46,65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경남81무 1657	2018. 9.17	이사	24,98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87고 8428	2018. 9.17	이사	33,31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94우 7597	2018. 9.17	이사	44,46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생	경남81무 1657	2018. 9.17	이사	24,980	52304	화개면	섬진강대로 ****
서*원	50노 3262	2018. 9.17	이사	66,030	52302	화개면	쌍계사길 **
정*희	86오 1982	2018. 9.12	이사	23,260	52320	횡천면	남산길 **
성*배	74조 7122	2018. 9.13	이사	16,210	52319	횡천면	구여의길 *-*
성*배	96주 3219	2018. 9.13	이사	115,210	52319	횡천면	구여의길 *-*
성*배	90도 6215	2018. 9.13	이사	36,470	52319	횡천면	구여의길 *-*
성*배	97더 6772	2018. 9.13	이사	49,790	52319	횡천면	구여의길 *-*
성*배	04부 1608	2018. 9.13	이사	8,390	52319	횡천면	구여의길 *-*
오*수	21우 4280	2018. 9.13	이사	37,720	52334	횡천면	구학길 **~**
오*수	경남90자 8315	2018. 9.13	이사	66,040	52334	횡천면	구학길 **~**
정*은	97거 2180	2018. 9.13	이사	340,650	52319	횡천면	문화3길 **~*
정*은	92너 8814	2018. 9.13	이사	52,330	52319	횡천면	문화4길 **~*
정*은	97나 1024	2018. 9.13	이사	3,130	52319	횡천면	문화5길 **~*
박*준	서울83도 3032	2018. 9.13	수취인 불명	136,910	52334	횡천면	구학길 **~*
박*준	97거 2143	2018. 9.13	수취인 불명	4,860	52334	횡천면	구학길 **~*
박*근	70누 1231	2018. 9.13	이사	287,240	52319	횡천면	문화2길 **~*
이*숙	98수 8724	2018. 9.13	이사	489,290	52319	횡천면	경서대로 ****
여*열	83수 3197	2018. 9.13	이사	20,060	52319	횡천면	여의길 **~*
이*기	83수 3102	2018. 9.13	수취인 불명	24,770	52334	횡천면	인동길 *-*
김*채	07버 8195	2018. 9.13	이사	28,080	52319	횡천면	문화1길 **

녹색제 작원영 농조합	11두 8291	2018. 9.13	수취인 불명	10,240	52320	횡천면	원곡길 **-*
김*태	경남7모 3725	2018. 9.17	이사	180,540	52319	횡천면	상월길 *